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3. 22 선고 2021가단201858 판결 [계약금반환청구]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백진규, 조수정, 김재영, 김두한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2. 1.

판 결 선 고 2023. 3.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12.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8,600만 원, 공사기간 2020. 12. 14.부터 2021. 1. 24.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21. 1. 3.경 공사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4,300만 원에서 기성고 부분 공사대금 2,966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요구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4,300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 ·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등 참조).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인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데, 그 기성고 비율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도급인인 원고가 수급인인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의 일부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기성고 부분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300만 원이 기성고 부분의 공사대금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소외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 또는 소외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등의 내용만으로 피고가 이행한 부분의 기성고 비율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기성고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범용

1) 원고는 2022. 10. 6.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4,300만 원에서 기성고 부분 공사대금 2,966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